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29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김예지・이수진・김형동

임종득 • 최수진 • 강대식

김대식 · 김선교 · 서미화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 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 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제42조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인"은"을 ""의료"는 "안마"로, "의료인"은"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6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4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제82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말한다)"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마에 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마시술소 또 는 안마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안마사) ①・② (생 략)	제82조(안마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③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u>제59조제1항</u> ,	<u>제42조제3항,</u>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	
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	<u>'의료"</u>
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	는 "안마"로, "의료인"은
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	
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	
마사회장"으로 한다.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 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 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 · 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2. ~ 4.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u>제42조제3항</u>을 위반하여 <u>의</u>
 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56조제1항(제8
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u>· 제3항</u>
2. ~ 4. (현행과 같음)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③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3항(제82조제3항에
같음) ③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3항(제82조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료기관(제8
같음) ③
같음) ③
같음) ③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